

# 통역사에 관한 당신의 권리



## 저에게 통역사를 선정받을 권리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1964년 연방시민권리법령(Federal Civil Rights Act of 1964)과 뉴저지주 차별반대법(The New Jersey Law Against Discrimination)은 출생지 차별에 제재를 가합니다. 공공사무소, 공립학교, 공립병원, 경찰서, 법원, 소방서와 같이 연방 정부나 주에서 자금을 받는 기관, 또는 국선 변호인단과 같은 비영리 단체 모두 무료 통역사를 선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기관들은 본인이 필요한 경우 번역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무료 통역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연방법 혹은 주법에 의거하여 출생지 차별로 간주됩니다.

## 통역사가 필요하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만약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해당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Korean is my native language. I need an interpreter”  
(저의 모국어는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혹은 이 문서의 영문판을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보여 주십시오.

## 만약 해당기관이 통역사를 제공하길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그 기관에 통역사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그 후, 이 문서의 영문판을 해당기관에게 제시하십시오.

## 통역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통역사를 기다리는 동안 손실이 발생하거나 마감일을 넘겨버리게 되었다면 이는 통역사를 제공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음을 뜻합니다. 통역사를 제공받기까지의 시간을 잘 기록해 두십시오.

## 누가 통역사에게 비용을 지불하나요?

통역사 비용은 본인이 도움을 청한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기관이 본인에게 비용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입니다.

## 해당기관이 개인 통역사 선임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본인은 개인통역사를 고용할 권리가 있지만, 해당기관이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고용한 개인 통역사 대신 해당기관의 통역사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친지나 지인 등을 보조인 겸 통역사로 쓸 수 있지만 해당기관이 이 분을 통역사로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18세 미만)를 통역사로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통역사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통역사는 본인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을 정부기관 직원, 판사, 변호사, 혹은 그 외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영어로 정확하게 통역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역사는 또한 정부기관 직원, 판사, 변호사, 타 서비스 제공자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을 한국어로 정확하게 통역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역을 위해 통역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동일한 수준으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양쪽 언어 모두 어휘 구사 능력이 비슷해야 합니다. 통역사는 준수해야 할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가령, 화자가 1인칭을 쓸 경우 통역사 또한 1인칭으로 통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통역사가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해당 공공기관 직원, 법관, 검사, 혹은 다른 해당직원에게 이를 보고 하십시오.

## 만약 제가 통역사의 통역을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귀하는 본인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통역사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면 통역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다시 한번 반복해 달라고 하십시오. 통역사나 담당 직원에게 질문하기를 꺼리지 마십시오. 만약 이러해도 통역사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없다면 해당기관이나 담당 직원에게 이를 보고 하십시오.

## 만약 해당기관이 통역사를 제공하길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경우 우선 구두로 항의하시고 그 후 서면으로 이를 제출하십시오. 민원 신청을 위해 본인과 면담한 사람들의 이름과 면담 시간을 잘 기록해 두십시오. 또한 모든 문서와 관련 기록물 등은 복사한 뒤 다음 절차를 밟으십시오:

- 통역사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거절한 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두십시오.
- 본인과 면담한 직원의 상급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십시오.
- 만약 이러해도 통역사를 제공받을 수 없다면, 해당하는 책임자나 책임기관에 민원을 제출하십시오:
  - 해당기관이 시립기관일 경우엔 시장에게
  - 해당기관이 속해있는 주지사에게
  - 해당 하원의원에게
  - 해당 국회의원에게
  - 해당기관의 국장·중역·이사에게
  - 뉴저지 시민권리과(New Jersey Division of Civil Rights)에
  - 통역사 제공을 거부한 기관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에
  - 미국 법무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에
-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 민원신청을 하십시오.

##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만약 통역사나 번역된 문서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 데 이 모든 절차를 밟으실 수 없거나 통역사 제공 거부 기관에 민원 신청을 하실 때 도움이 필요하시면, 뉴저지주 무료 법률 전화 상담 LSNJ LAW™로 연락하십시오. 뉴저지주에 거주하시면 1-888-LSNJ-LAW(1-888-576-5529)으로, 뉴저지주 밖에 거주하신다면 732-572-9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상담 서비스는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법률 서비스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전화를 주시면 다른 방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1-888-LSNJ-LAW**  
**(1-888-576-5529)**